

현안분석 2006-

학생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 감독기구의 설치를 중심으로 -

현 대 호

학생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 감독기구의 설치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Legal Protection of Student Information

연구자 : 현대호(부연구위원)

Hyeon, Dae-Ho

2006. 10.

국문 요약

우리나라는 2004년 말에 교육정보시스템에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하였지만 학생정보의 보호는 여전히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일반 법에 맡겨두고 있다. 즉 학생정보의 보호는 개인정보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입법이 요구되며, 이 법에서는 학생정보에 대한 공개와 학부모의 열람권·정정권·삭제권 및 반론권 등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학생정보의 감독기구 설치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는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설치에 관련된 다양한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어서 감독기구의 특성 등을 예상하기가 곤란하다. 그렇지만 국가차원의 개인정보의 감독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하여도 학생정보는 그 특성에 비추어 독자적인 입법영역을 구축할 수 있어서 별도의 감독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자문형의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법률차원에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학생정보의 침해사건에 대한 심의, 보호시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NEIS시스템의 단독서버·그룹서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할 수 있다.

※ 키워드 : 학생정보, 교육정보시스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Abstract

Korea revamped laws and regulations involving its National Education System at the end of the year 2004, but the protection of student information is still governed by general law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tudent information needs to be protected in a manner different from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enacting a separate law, which would specify the disclosure of the student information and the rights of parents to inspect, correct, delete or refute such information.

Recently, there has been in Korea a discu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body on the protection of student information. In this context, various legislative proposals are currently brought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with the view of establishing a bo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ough a national-level body might be established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set up a separate body on the protection of student information because such information should be dealt with in the area of more specialized legisl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its peculiarity.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to set up an advisory protective organization withi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hich, in the long run, would be stipulated as a law-level body. To this end, tentatively named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Student Information” may be established to deal with deliberations on student information infringement cases,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student information and public relations thereabout,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etc. of single and group servers of the NEIS system.

※ Key Words : Student Information, National Education System,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설	1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 2 장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5
제 1 절 개 관	15
제 2 절 교육정보시스템의 발달과 설계기준	15
I. C/S시스템	16
II. NEIS시스템	17
III. C/S시스템 및 NEIS시스템의 비교	18
제 3 절 교육정보시스템과 적용범령	19
I. 수기(手記)방식	19
II. C/S시스템	20
III. NEIS시스템	21
제 3 장 학생정보의 보호와 입법과제	23
제 1 절 개 관	23
I. 학생정보의 의의	23

II. 교육정보 및 행정정보와의 구별	23
제 2 절 외국의 입법례	25
I. OECD	26
II. 미 국	28
III. 독 일	31
IV. 일 본	34
V. 소 결	35
제 3 절 분야별 학생정보의 보호	36
I. 학생정보의 수집	36
II. 학생정보의 이용	36
III. 학생정보의 제공	37
IV. 학생정보의 저장	37
제 4 절 현행법령과 적용사례	38
I. 적용법률	38
II. 적용사례	48
제 5 절 소 결	51
제 4 장 학생정보 감독기구의 설치와 그 방안	53
제 1 절 개 관	53
제 2 절 개인정보와 학생정보의 감독기구	53
I. 최근 개인정보의 입법동향과 감독기구	53
II.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 등과 학생정보의 감독기구	58
제 3 절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와 그 방안	61

I. 감독기구의 특성	61
II.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방안	62
제 5 장 결 론	71
 【 부 록 】	
미국의 “가족의교육권및프라이버시에관한법률”	73
참 고 문 헌	87

제 1 장 서 설

제 1 절 연구의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모두 고도화 된 정보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어서 정보사회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가치도 급상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분야의 정보화사업 중에서 교육정보화에 따른 교육정보의 전산화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다. 즉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설계기준과 입력정보 및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개인정보(학생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정보화사업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특히 2004년에 (구)국무총리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 및 정부 방침('04. 3. 5, 국무조정실)에서는 NEIS시스템에서 학생정보를 분리하여 독립된 서버로 관리할 것을 정하였고, 아울러 다시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하도록 하였으며, 학생정보의 보호를 위한 감독기구의 설치에 대하여도 언급한 바가 있다.¹⁾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5년 12월에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였는데, 특별법의 제정은 아직까지 시도되고 있지 아니하다. 2006년 초부터는 새로운 NEIS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여 가동하는 것과 함께 감독기구

1) 국무총리 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 및 정부 방침('04. 3. 5, 국무조정실)

감독기구는 학교장의 정보관리 권한을 보장하고, 시범운영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서버 운영 방안을 재검토하는 등 새로운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 담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내에 교육정보보호분과를 설치하고 중앙단위 감독기구 기능 담당
- 시도단위에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분야인사가 참여하여 시도단위의 감독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방안 강구

의 설치방안이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방침에서 제안하고 있는 감독기구의 설치에 국가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제·개정과 맞물려서 지연되고 있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현상환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2006년 새로 구축된 NEIS시스템의 설계기준과 입력정보 등 NEIS시스템의 운영에 관련된 사실관계와 적용법령(또는 적용판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새로운 입법방안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학생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감독기구의 설치여부와 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는 연구목적에서 밝힌 것처럼 학생정보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현행법을 분석하고, 새로운 입법영역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 후 학생정보의 감독기구 설치여부와 그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학생정보의 보호와 적용법률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학생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설치방안 등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미국의 ‘가족교육권과프라이버시에 관한법률’을 번역 첨부하여 새로운 입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소주제로 ‘감독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독기구는 감사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기관 형태의 독립된 감독기구를 포함하는 동시에 일종의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조직 내의 각종 위원회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 연구결과로 제안하고 있는 (가칭)학

생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방안은 법률형태의 독립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감독기구가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내의 자문형 위원회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학생정보의 처리 및 활용상황, 관련법령의 정비 상황, 그리고 국가차원의 각종 개인정보법령 등을 종합하여 현시점에서 정부내의 자문형 위원회가 감독기구로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제 2 장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제 1 절 개 관

우리나라의 NEIS시스템으로 처리되는 학생정보의 보호와 감독기구의 설치여부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NEIS시스템의 분석과 관련 현행법제의 분석이 요구된다. 즉 NEIS시스템으로 처리되는 학생정보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먼저 NEIS시스템의 기술상 설계기준과 권한분배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 NEIS시스템에서 처리되는 학생정보의 범위(대상)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NEIS시스템을 통하여 학생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현행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감독기구의 설치 필요성도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NEIS시스템의 구축 · 운영과 관련된 사항과 NEIS시스템의 설계기준 및 관련된 법령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교육정보시스템의 발달과 설계기준

교육정보시스템의 도입은 수기에 의한 정보의 작성, 관리 및 집적을 전자화하는 시도에서 이루어졌다. 즉 교육정보시스템은 최초에 개인 PC에서 운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프로그램(S.A, Stand Alone)의 도입에서, 그 다음으로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 Client Server)의 도입으로, 그리고 현안으로 논의되어 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으로 발달되어 왔다. 아래에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보겠지만, S.A시스템과 C/S시스템은 그 설계기준이 학교내에 제한된 폐쇄적인 정보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양자의

시스템은 규범적인 차원에서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여기서는 C/S시스템을 중심으로 다룬다). 여기서 S.A시스템이란 수기에 의한 기록의 작성·관리를 독립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순히 전자화 된 데이터 베이스로 수집·관리 및 집적하는 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C/S시스템이란 학교 내에서 전산망을 구축하여 학교라는 폐쇄적인 통신망에서만 정보를 수집·관리 및 집적하도록 설계된 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I. C/S시스템

1. 설계기준

C/S시스템의 설계기준은 첫째, 학교내의 폐쇄적인 정보시스템에 해당된다. 둘째, C/S시스템의 관리, 운영은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C/S시스템의 서버도 초·중등학교에 위치한다. 셋째, C/S시스템의 접속방식은 ID와 Password를 이용하고, ID등록은 서버관리자가 한다. 넷째, S.A시스템은 권한부여기능이 없고 C/S시스템은 권한부여기능이 있으며 그 권한부여는 업무별로 학교의 장이 한다. 다섯째, C/S시스템의 시스템보안은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을 사용하지만, 방화벽을 설치한 학교마저도 보안 취약점이 대부분 공개되어 있다.

2. 입력정보

C/S시스템의 입력정보에 관련된 사항은 첫째, 그 대상이 학생정보이다. 둘째, 학생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저장은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저장의 경우 S.A시스템은 PC의 하드디스크이며, C/S시스템은 개별적인 학교서버이다. 셋째, 학생정보를 이용한 2차자료의 생성, 제공은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진다. 넷째, 학생정보의 민원서비스는 해당 초·중등학교에서 한다.

II. NEIS시스템

NEIS시스템은 C/S시스템의 학내망과 달리 원래 웹과 16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의 서버를 기준으로 설계된 정보시스템(2006년에 새로 구축된 NEIS시스템(학생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된 서버로 관리하는 것이다)이다. 즉 NEIS시스템이라 함은 종래 모든 교육행정기관 및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학교내 행정정보는 물론 전 교육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인사, 예산, 회계, 교무/학사, 보건 등 27개 영역(기획, 공보, 법무, 감사, 재산등록, 교육통계, 입(진)학, 장학, 교무/학사, 검정고시, 평생교육, 보건, 체육, 교원인사, 일반직 인사, 급여, 민원, 비상계획, 법인, 시설, 재산, 물품/교구/기자재, 예산, 회계, 학교회계, 급식)으로 나누어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각 시·도 교육청(16개의 시·도교육청)²⁾에 서버를 두고서 시·도교육청은 시스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하되 직접 입력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권한을 인증받은 각급학교의 담당교사가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관리하도록 설계된 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2006년에 새로 구축된 교육정보시스템에서는 학생정보를 별도로 분리·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16개 시·도교육청 서버의 별개의 단독서버와 그룹서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설계기준

NEIS시스템의 설계기준은 첫째, 웹기반의 정보시스템에 해당된다. 둘째, NEIS시스템 서버의 위치는 16개의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이고,

- 2)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그 서버의 운영은 각각의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 한다. 셋째, NEIS 시스템의 접속방식은 ID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고, 공인인증서는 한국전산원이 발급한다. ID등록은 한국전산원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교원이 시·도교육청에 신청하여 이루어진다. 넷째, NEIS 시스템의 권한부여는 C/S시스템보다 세분화하여 업무별 권한부여를 하고, 권한부여의 주체는 초·중등학교의 장이다. 다섯째, NEIS시스템의 경우 시스템보안은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서버보안, 주요 신상정보의 암호화(주민번호 등)DB서버의 분리운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입력정보

NEIS시스템의 입력정보는 27개의 영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이들 정보를 유형화하면 학생정보·교원정보 및 교육행정정보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서는 학생정보에 대하여서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의 주체가 초·중등학교이고, 1차자료와 이를 이용하여 생성한 2차자료(통계자료)는 학교에서 이용되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에서 생성한 2차자료를 교육정책(또는 교육행정)이나 교육통계 등에 활용한다. 둘째, 학생정보의 저장은 학교에서 하고, 백업은 16개의 시·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며, 교육부의 서버는 학생정보의 저장이나 백업을 할 수 없다. 셋째, 학생정보의 민원서비스(졸업증명서 1종)는 모든 초·중등학교(다른 학교에서도 가능함)와 시·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다.

Ⅲ. C/S시스템 및 NEIS시스템의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C/S시스템과 NEIS시스템의 입력정보 및 기반기술의 차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1] 기반기술의 비교

구 분		C/S시스템	NEIS시스템	
설 계 기 준	적용기술	Client Server 방식	Web 방식	
	서버의 위치, 관리	초·중등학교	시·도교육청, 교육부	
	접속방식	ID와 Password	ID와 공인인증서	
	권한 부여	기 능	○	○
		방 법	업무별 권한부여	업무별 권한부여
		주 체	초·중등학교의 장	초·중등학교의 장
	인증서의 이 용	×	공인인증서 (한국전산원이 발급함)	
시스템보안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 템, 서버보안, 주요신상정보 암호화 DB서버의 분리 등		
학 생 정 보	작성(수집), 이 용	초·중등학교	초·중등학교	
	제 공	초·중등학교	초·중등학교	
	저장, 백업	초·중등학교	초·중등학교(저장), 시·도교 육청(백업)	
	민원서비스 (졸업증명서 발급)	해당 초·중등학교	모든 초·중등학교, 시·도교 육청, 지역교육청	

제 3 절 교육정보시스템과 적용법령

I. 수기(手記)방식

학생정보는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검사기록 및 기타 학생정보라는 3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검사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이고, 이 조항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

진다. 다음으로, 건강검사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학교보건법 제7조제1항과 동법 제7조의3이고, 이들 조항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II. C/S시스템

위에서 다룬 수기로 작성한 학생정보를 전자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가가 문제된다. 교육정보의 전자화에 대한 법적 근거는 우선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8조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주민등록정보의 전산화, 부동산등기부의 전산화 등 각종 행정정보의 전자화와 전자정부의 추진에 관련된 핵심적인 근거조항이고, 국·공립학교의 교육정보에 대한 전자화의 근거로 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정보의 전자화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법률은 교육기본법 제23조와 NEIS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신설하였다고 하는 교육기본법 제23조의2이고, 이들 조항에 의하여 교육정보의 전자화(또는 교육정보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는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 제23조, 제23조의2는 교육정보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조항이자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근거조항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C/S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는 ‘학교종합정보시스템운영지침(2002.12.20.폐지)’에서, NEIS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에서 규정되었다. 사실 S.A시스템이나 C/S시스템은 수기에 의한 학생정보의 작성이나 관리를 단순히 정보시스템에 의한 정보의 수집(생성)·이용·제공 및 저장으로 변환한 것에 불과하고, 학생정보의 관리권한이나 접근권한도 이들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S.A시스템이나 C/S시스템에서는 수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생

정보의 작성·관리의 주체는 학교장이고, NEIS시스템의 도입 전까지는 교육정보화의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Ⅲ. NEIS시스템

종래 NEIS시스템의 도입은 전자정부법 제8조와 교육기본법 제23조, 제23조의 2에 기초하고 있었다. NEIS시스템은 16개의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서버를 기준으로 설계된 웹기반의 정보시스템에 해당되고 또한 NEIS시스템의 설계기술, 보안기술 및 권한부여기술에 따라서 사생활권, 교육정보의 처리나 관리에 대한 권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NEIS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교육정보의 처리 등에 관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2005년 개정에서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의 상당부분을 보완하였다.

제 3 장 학생정보의 보호와 입법과제

제 1 절 개 관

I. 학생정보의 의의

학교에 의하여 수집된 학생정보는 교육현장에서 직접 이용되어 학생의 교육에 활용되어 왔고, 수집된 학생정보는 다시 학교에 의하여 각종의 통계자료로 가공된 2차자료로 생성될 수 있다. 2차자료는 학교에서 학생교육을 위한 목표설정에 활용되고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제공되어 교육정책 등에 이용되어 왔다. 이와 같은 학생정보의 이용은 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되었는데, 수기의 경우 주로 학생정보의 단순한 관리나 집적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학생정보는 1차자료의 이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2차자료의 생성도 쉽게 할 수 있게 하여 학교교육과 교육정책에서 보다 널리 이용되어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학생정보의 수집·관리는 교육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학생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인 경우에도 허용되어 왔으며, 수집된 학생정보는 학교에서 학생지도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II. 교육정보 및 행정정보와의 구별

NEIS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정보는 교육정보에 해당되고, 여기서 교육정보란 넓은 의미에서 초·중등학교와 대학 등의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에서 생성하는 일련의 자료(정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개념에는 NEIS시스템에 입력되는 항목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포섭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교육정보라는 개념과 달리, 여기서는

NEIS시스템에 입력되는 초·중등학교에서 생성되는 교육정보를 의미하고, 그 중에서도 학생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학생정보를 의미하는 좁은 개념을 주로 의미한다. 즉 교육정보란 NEIS시스템에 입력되는 학생정보(학교생활기록, 학생건강기록, 기타 학생정보), 교원정보(교원 인사기록), 학교행정정보(학교법인정보, 각종의 학교행정기록)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나, 좁은 의미로 학생정보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NEIS시스템과 관련해서 학생정보란 NEIS시스템에서 처리되는 학교생활기록, 학생건강기록, 기타 학생정보를 말한다.

NEIS시스템에 입력되는 교육정보 중에는 민감한 개인정보(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단순한 학교행정정보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데, 학생정보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권에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즉 학생정보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집 및 관리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예컨대, 보건의료정보, 형사기록정보 등)와 달리 그 유형에서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학생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저장에 있어서도 학교라는 특수한 기관에 제한되었으며, 또한 교육과정에서 생성되는 학생정보는 학교 내에서만 이용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특이하다. 그런데 종래 교육관련법에서는 학생정보의 이용이나 보호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보건법 제7조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23조에서 학생정보의 기록 및 관리에 대한 책임자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시스템으로 처리되는 학생정보에도 적용되는데(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이 법은 정보시스템으로 처리되는 행정정보를 전제로 한 것으로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는 학생정보를 보호하고 그 이용을 적절히 규율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행정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아닌

한 공공기관에서 공동 이용하여 행정의 능률과 민원인의 편의 등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집·이용·제공 및 저장에서 제한을 받는다(전자정부법 제11조·제21조,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제10조 참조). 이에 반하여 학생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교육기관 내에서도 공동이용이 제한된다(다만, 학생의 기본적인 신상정보 등은 행정정보와 유사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의 모든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일반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학생정보를 특별히 세부적으로 규율하기가 어려운데, 학교현장에서는 그 활용의 증대에 따라 학생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며,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이 학생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모두 커버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아서 2005년 관련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 2 절 외국의 입법례

학생정보의 보호는 우선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법률의 적용여부가 문제되고, 다음으로 학생정보의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 법률의 적용이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OECD의 지침이 학생정보와 관련해서 새로운 입법을 제정하거나 현행법을 개정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개별적인 연방법과 학생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특별법이 있어서 중요한 분석대상이 된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특별법 형태의 독립된 학생정보에 대한 법률은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OECD의 지침과 미국·독일 및 일본의 관련 입법현황과 관련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I . OECD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21세기 정보사회에서 회원국이 맞이하고 있는 정보화에 따른 공통된 규범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각종의 지침을 마련하여 왔다. 물론 OECD의 지침은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이용, 그리고 암호이용에 따른 정보화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 교육정보화와 관련하여 NEIS시스템상에서 처리되는 학생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하여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정보화에 관련성이 있는 OECD의 지침을 선택하여 그 목적과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지침으로 1980년에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국경의 유통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을, 뒤이어 1985년에 ‘정보의 국경의 유통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ransborder data flows)’을 채택했다.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국경의 유통에 관한 지침’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8개의 기본원칙(수집제한의 원칙·데이터 양질의 원칙·목적 명시성의 원칙·이용제한의 원칙·안전성 유지의 원칙·공개의 원칙·개인참여의 원칙 및 책임의 원칙)을 채택했고,³⁾ 이들 원칙은 새로운 입법의 제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교육정보에 관한 입법정비의 경우에도 이들 원칙을 반영하여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요구된다. 원래 이 지침의 목적은 회원국 내에서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과 부정확한 개인정보의 저장 또는 이용 및 개인정보의 공개행위를 기본적 인권의 침해로 간주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국사이의 입법의

3) 자세한 것은 현대호, 인터넷상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00, 18~32면 참조.

차이가 개인정보의 국경의 유통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합법적인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여 금융 및 보험과 같은 중요산업을 왜곡하므로 통일된 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보시스템에 관한 지침으로 1992년에 정보시스템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통일된 규범을 형성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에서 9개의 기본원칙(책임의 원칙·주지의 원칙·윤리의 원칙·분야별 협력의 원칙·비례의 원칙·통합의 원칙·적절성의 원칙·재평가의 원칙 및 민주주의의 원칙)을 채택하였는데, 이 지침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모두를 위하여 제정되었고 모든 정보시스템에 적용된다. 이 지침의 목적은 첫째 정보시스템의 위험과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보안장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둘째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하여 통일된 조치·관행 및 절차의 개발과 구현을 위한 책임을 지우는 일반적인 기반을 구축하며, 셋째 이러한 조치·관행 및 절차의 개발과 구현에 있어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사이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넷째 정보시스템과 이용되는 수단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다섯째 국내·외적으로 정보시스템의 개발과 이용을 자극하며, 여섯째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시킨다.

마지막으로, 암호정책에 관한 지침으로 1997년에 ‘암호정책을 위한 지침(cryptography policy guidelines)’에서 암호의 개발과 이용에 통일된 규범을 형성하기 위하여 8개의 기본 원칙(암호방법에 있어서 신뢰성·암호방법의 선택·암호방법의 시장주도적 개발·암호방법의 표준화·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합법적인 접근·책임성·국제적 협력)을 채택했는데, 이들 원칙은 NEIS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보안기술과 관련되어 있고 적어도 NEIS시스템의 보안책임과 암호이용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NEIS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여

야 하는 것보다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이 지침은 첫째, 암호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암호가 사용되는 정보통신기반·네트워크 그리고 시스템에서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국내·외적인 정보통신기반·네트워크 그리고 시스템에서 정보의 안전성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한다. 둘째, 공적안전·법집행 그리고 국가안전에 위협이 없는 암호이용을 촉진시킨다. 셋째, 국내·외적인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 암호방법의 호환성과 이동성의 필요뿐만 아니라 모순되지 아니하는 암호정책과 입법의 필요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킨다. 넷째, 효과적인 암호이용을 위한 일치된 국내·외적인 정책·방법·조치·관행 및 절차의 개발과 구현에 있어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의사결정권자를 조력한다. 다섯째, 저렴하고 호환성 있고 이동성 있는 암호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킨다. 여섯째, 암호방법의 일치된 사용을 위하여 정부, 산업체와 연구단체 그리고 표준화기구사이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II. 미 국

1. 개 요

미국에서 개인정보는 전통적으로 커먼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개별적인 연방법률에 의해서도 보호된다. 즉 개인정보에 관한 대표적인 입법으로는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1974)을 들 수 있고, 공정신용기록법(Fair Credit Reporting Act, 1970), 공정신용경리법(Fair Credit Bilding Act, 1976년 개정), 가족의교육권및프라이버시에관한법률(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1976년 개정), 공정한채무수집집행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1977), 금융프라이버시에관한법률(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1978),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1986), 컴

퓨터통합및프라이버시보호법(Computer Matching and Privacy Protection Act, 1988), 비디오프라이버시보호법(Video Privacy Protection Act, 1991), 어린이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1999)등이 있다.

2. 가족의교육권및프라이버시에관한법률

이 법은 가족과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연방법이고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이 법의 번역문은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첫째, 이 법에서 교육기관은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공립·사립기관을 의미하고,⁴⁾ 교육기록⁵⁾은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 파일, 문서 및 기타 자료 중에서 교육기관이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교사 등의 교원이 오직 사적으로 보유하는 부수적인 기록이나 피용자의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생성되는 기록 등은 제외된다.⁶⁾

둘째, 이 법은 교육기관이 학부모의 자녀 교육기록에 대한 검사나 열람을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다면 이용가능한 기금의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교육기관은 학생기록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하나의 문서에 다수인의 학생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각각의 학부모가 해당 기록을 검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⁷⁾

셋째, 이 법은 교육기관이 학생의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기록에 부정확, 오인 또는 기타 학생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이 있는 기록에 대한 정정이나 삭제를 청구한 경우에 청문회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부정확·오인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정정이나 삭제를 하여야 하며,

4) FERPA §1232g(a)(3).

5) 이 법에서는 교육기록(education record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학생정보라는 용어를 포섭하는 개념에 해당된다.

6) FERPA §1232g(a)(4)(B).

7) FERPA §1232g(a)(1).

학생기록의 내용에 대하여 학부모가 반론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학생 기록에 첨부하여야 이용가능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⁸⁾ 즉 학부모나 자격이 있는 학생은 학생기록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학교에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학교가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학부모나 자격이 있는 학생은 공청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학부모나 자격이 있는 학생은 공청회 후에도 학교가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다툼이 있는 정보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기록에 표시할 권리가 있다.

넷째, 이 법에 의하여 이들 권리는 학생이 18세 이상이 되거나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면 학생에게 이전된다. 즉 자격이 있는 학생은 학교에서 보관하는 학생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다섯째, 학교가 학생기록의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나 자격이 있는 학생의 서면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이 법은 (i) 교육상 정당한 이익을 가진 학교관계자, (ii) 학생이 전학 가는 학교, (iii) 감사나 평가를 위한 특정된 관계자, (iv) 학생의 재정적인 지원과 관련된 관계자, (v) 학교에 관하여 또는 학교를 대신하여 어떤 조사를 행하는 기관, (vi) 승인받은 기관, (vii) 법원의 명령이나 정당한 영장에 응하는 경우, (viii) 보건 및 안전 조치에 관련된 관계자, (ix) 주법에 의하여 청소년사법제도 내에서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기관에 한해서 동의없이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

여섯째, 교육기관은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 생년월일, 수상경력, 그리고 출석일수 등과 같은 인명정보(directory information)⁹⁾를 동의없이 공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학교는 인명정보에 대하여 학부모와

8) FERPA §1232(a)(1)(c).

9)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directory information” relating to a student includes the following: the student’s name, address, telephone listing, date and place of birth, major field of study, participation in officially recognized activities and sports, weight and height of members of athletic teams, dates of attendance, degrees and awards received, and the most recent previous 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 attended by the student(20U.S.C.1232g(5)(A)).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학부모와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인명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학교는 매년 학부모와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이 법에 의하여 이들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하고, 실질적인 통지수단(예컨대, 서신, 학생수첩, 또는 학교신문 등)은 해당 학교에 위임되어 있다.

III. 독 일

독일의 경우 학생정보의 보호만을 위한 연방차원의 법률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연방데이터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이 학생정보의 보호에 주로 적용된다. 독일의 연방데이터보호법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관련 정보는 정보의 조사로부터 처리(저장, 변경, 전달, 삭제, 이용)를 거쳐서 익명화 할 때까지 보호되며, 이 법은 공공부분 및 민간부분 모두에게 적용된다.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자료 가운데 자동화된 정보처리뿐만 아니라 수작업 문서들도 그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둘째, 자기정보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관련 정보를 처리하고 이용할 때 목적구속 원칙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의 정보만을 조사·저장·변경·이용이 허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개인정보 관련자의 권리를 여러 측면에서 보장하고 있다. 자기에 관한 정보처리와 저장기관을 통한 이용에 관하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에게 인정되는 설명권은 개인정보를 인정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통제권이다. 이러한 정보에 관한 설명과 동의요구를 통하여 저장된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정정하거나 통제할 기회가 관련자에게 보장된다. 이러한 권리는 누가 저장기관인지를 알

수 없는 파일결합과 전산망에서 정보처리로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연방기관의 개인관련 정보조사·처리·이용을 통하여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방정보보호 담당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또한 개인관련 정보를 광고와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전달하는 것에 대한 항변권이 관련 개인에게 인정되고 있어서 관련 개인이 항변하면 해당정보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넷째, 컴퓨터 연결을 통한 직접호출 절차는 정보가 교환되는 관련자의 이익이 고려되고 해당기관의 목적수행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함으로써 자동화된 호출절차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정보전달의 원인·목적·정보수신인·종류 등이 문서로 확인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었다.¹⁰⁾ 연방공공기관¹¹⁾에 대한 감독은 연방개인정보보호감독청이 담당한다. 연방개인정보보호감독청은 연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불만이나 민원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관할영역에 해당하는 기관들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조사·감독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할범위에 해당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등록하는 등록부를 유지·관리하고, 의회 및 정부에 대하여 법률·정책자문을 행한다. 또한 주 개인정보보호기구와의 협력과 업무의 조화를 위해서 1년에 두 차례 연례회의를 하는 등 다른 개인정보보호기구들과의 협력체계도 유지하고 있다.¹²⁾ 연방개인정보보호감독관은 의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

10) BDSG §22.

11) 연방 공공기관의 범위는 연방정부와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는 법인·시설·재단 및 주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해당 주 밖에서 활동하는 주 공공기관과 연방법원을 포함한다.

12) 독일 연방개인정보보호청의 주요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이창범·윤주연,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연구보고서, 정보보호진흥원, 146면 참조).

명하도록 되어있다. 주의 개인정보보호감독관은 주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¹³⁾을 감독한다. 이들은 연방데이터보호법 준수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수행하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홍보 등도 담당한다. 그리고 확인된 위반행위, 기술적·관리적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화해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여섯째, 독일의 감독기구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기구와 민간부분에 대한 감독기구로 나누어진다.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기구를 살펴보면, 연방데이터보호법 제22조를 근거로 1977년에 설립된 연방개인정보보호감독관이 연방정부,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은 법인시설 재단과 주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해당 주 밖에서 활동하는 주의 공공기관 및 연방법원 등의 공공기관을 감독한다.

[도표 2] 독일 연방개인정보보호청의 주요기능 등의 비교분석

주요기능	내용
정보처리 등록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소정의 사항을 신고받아 등록
법규준수 조사·감독	· 연방정부 등의 정보보호법 준수실태 모니터링 · 의회·연방정부의 요청시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하여 조사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피해구제	· 연방정부 등을 상대로 한 각종 개인정보침해신고접수 ·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실조사 · 침해행위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원상회복 등 권고 · 정보주체의 접근·정정·삭제요청권을 대신하여 행사
정보제공	·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 정보주체, 정보처리자 등의 권리·의무에 대한 지침 제공
법률·정책 자문	· 정부에 대하여 정책자문 · 매2년마다 연차보고서 작성 및 연방의회 보고 · 의회·정부 요구시 의견서, 조사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법률자문 및 권고
교육·홍보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 언론보도자료 배포 및 각종 위원회 발간물 작성
국내외 협력	· 주 개인정보보호기구 및 민간영역의 감독기구와의 협력 · 국제협력 강화

13) 주 공공기관은 주 정부 및 주 정부의 감독을 받는 법인·시설·재단을 포함한다. 민간기관의 범위는 연방 공공기관 및 주 공공기관이 아닌 자연인, 법인, 회사, 가타사법상의 사단을 포함하며, 민간기관이 공공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공공기관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IV. 일 본

일본의 경우에도 학생정보의 보호만을 위한 독립된 법률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학생정보의 보호에 적용된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1974년부터 정부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 1982년 7월 행정관리청 산하의 프라이버시보호연구회는 OECD 8개 원칙의 영향을 받아 일본의 실정에 맞는 5개 프라이버시 원칙을 제시하였고, 곧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조례들은 전산처리되는 개인정보만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일본에서의 공공부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는 1988년 제정된 ‘행정기관이보유하는전자계산기처리에따른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었으며 전국 1,5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었다.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는 1997년 3월 제정된 ‘민간부문에서의전자계산기처리에관련된개인정보보호에관한가이드라인’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각 사업단체는 통산성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관련 5개 법률이 성립하기 이전에는 공공부문의 경우 1988년 ‘행정기관이보유하는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있었지만, 민간부문은 일반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법에서 제한적으로 규율되어 왔다. 그렇지만 2003년에 정비된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합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각각의 부문에서 해당 법률을 두는 방식으로 전자의 경우 ‘행정기관이보유하는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 ‘독립행정법인등이

보유하는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설치법’을 마련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다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의 성격을 띤 기본이념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어느 정도 두 부문을 통합하려고 의도했다.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를 도모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주민기본대장법의 개정협약의와 개인정보대량 누설사건의 연속발생이 ‘직접원인’이라고 한다면,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과 EU의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에의 대응을 ‘간접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간접원인으로 컴퓨터 시스템의 보급에 의한 ‘데이터뱅크사회’의 도래를 배경으로 197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시작된 프라이버시의 권리개념의 변화를 지적할 수도 있다.¹⁴⁾ 2003년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합하는 기본법의 제정실패 등 개인정보보호관련 5개 법률이 그 한계를 내포하고 있지만, 이 정비로 개인정보보호의 국제적 규범에 일보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V. 소 결

이상에서 살펴본 외국의 입법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정보의 특성을 반영하여 미국의 경우처럼 독립된 입법을 한 경우도 있고, 독일이나 일본처럼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학생정보를 보호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된다. 미국의 ‘가족의교육권및프라이버시에관한법률’에서는 학생정보에 대한 공개 및 학부모의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및 반론권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들 권리의 실현을 위한 적절한 조치(예컨대, 기금사용의 제한 등)를 규정하고 있다.

14) 김성천,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에 관한 연구(현안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03, 39면.

제 3 절 분야별 학생정보의 보호

I. 학생정보의 수집

NEIS시스템에 의한 학생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수기나 다른 정보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종래 초·중등교육법 제25조와 학교보건법 제7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NEIS시스템에 의한 건강검사기록이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집과 관련해서 행정정보의 수집에 관한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4조가 적용되는데, 이 조항에서는 공공기관에 의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에서 명시한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 라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일반원칙을 밝히고 있다. 학생정보는 교육상 필요해서 수집하여 학생지도에 이용하여 왔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5조와 학교보건법 제7조제1항은 정보수집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2005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 제23조의3과 초·중등학교법 제30조의5에서 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에서 학생정보의 보호원칙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을 규정하였다.

II. 학생정보의 이용

NEIS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학생정보의 이용에 대하여 다른 정보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된다.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보유목적외 이용을 할 수 없고 법률에서 명시한 경우에만 보유목적 외의 이용이 허용된다고 하는 일반원칙을 밝힌 것에 해당된다. 이 원칙은 학생정보의 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입법에서 명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2005년 개정된 교육기본법 제23조의3에서 학생정보의 보호원칙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을 규정하였다.

Ⅲ. 학생정보의 제공

NEIS시스템에서 입력되어 있는 학생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종래 수기나 다른 정보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법 제25조가 적용된다. 이 조항은 학생정보의 작성 및 관리를 규정한 것으로 법문의 내용상 상급학교나 대학에 학생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조항으로 보기에 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이를 전제한 조항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보건법에서는 건강검사기록에 대하여 상급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라는 명시적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와 학교보건법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상급학교의 진학시 건강검사기록을, 타학교의 진학시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검사기록을 전달했으며 고등학교 졸업시에는 건강검사기록을 폐기하여 왔다. 이러한 관행은 학교라는 교육기관 내에서 이루어지고 학생교육의 차원에서 정당한 것이었기에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2005년 개정에서는 교육기본법 제23조의3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 제3항이 마련되었다.

Ⅳ. 학생정보의 저장

NEIS시스템에서 학생정보의 저장은 다른 정보시스템과 동일하게 종래 초·중등교육법 제25조와 학교보건법 제7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와 학교보건법 제7조의 규정이 불충분한 것은 아니었으나, NEIS시스템에서 학생정보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2005년 개정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 제1항을 신설하여 정보시스템에 의한 저장을 가능하도록 강화하였다.

제 4 절 현행법령과 적용사례

I. 적용법률

1.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1) 제정경위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가 선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전산망을 포함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러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결과 민원처리시간이 단축되는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크게 개선됨으로써 공공행정의 능률화를 이룩할 수 있었음에 반하여 입력정보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증대되는 등 정보화의 부작용을 동시에 노출하기도 하였다.

공공행정분야의 전산망 확충에 따른 이러한 부작용들을 기존의 법률들로 치료하기에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어 그 동안 학계와 언론 등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였으며, 1994년 1월 7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¹⁵⁾이 제정되어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된 이래로 1998년 한차례 개정되어 1999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¹⁶⁾

15) 법률 제5715호, 1999. 1. 29 공포·시행.

16)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1조.

(2)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가) 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기관으로는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다.¹⁷⁾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①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②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③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④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금지대상 기관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말한다.¹⁸⁾

이 법의 적용대상 정보로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일체의 개인정보¹⁹⁾이다. 따라서 사망한 자의 정보나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정보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정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²⁰⁾ 이 법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²¹⁾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하며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²²⁾ 이와 더불어 정보주체에게 처리정보에 대한 열람권과 정정권을 인정한다.²³⁾

17)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18)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조.

19) 여기서의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개인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 참조).

20)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2항.

21)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22)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참조.

23)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이하.

(나) 개인정보의 관리 및 이용

(a)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서의 인권보장

인종·정치사상·신조·건강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²⁴⁾ 또한 공공기관은 소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²⁵⁾

(b) 사항통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공고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²⁶⁾하도록 하고 있다.²⁷⁾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의 절차에 따라 통보 받은 사항을 년 1회 이상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²⁸⁾

24)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25)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5조.

26) 그 통보사항은 ①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②개인정보 파일의 보유목적 ③보유기관 의 명칭 ④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⑤개인정보의 수집방법 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⑥개인 정보 파일의 열람 예정시기 ⑦열람이 제한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그 사유 ⑧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이다(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제1항 각호).

27)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제1항.

28)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7조 본문.

다만, 공공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²⁹⁾

(c)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한계 및 안전성 확보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으며,³⁰⁾ 공공기관의 장(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도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³¹⁾

(d) 처리정보에 대한 이용의 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³²⁾

29)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7조 단서.

30)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5조.

31)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9조.

32)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2항). ①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④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⑤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⑦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기타

(e)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³³⁾

(다)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a) 열람·정정청구

정보주체는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 및 정정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명시한 것으로서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보유정보에 대하여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보유기관은 개인정보파일대장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열람 후 정보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유기관의 장에 의하여 이것이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다.³⁴⁾

(b) 권리구제

정보주체의 본인에 관한 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청구에 대한 관계 공공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의 결정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3)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34)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라) 지휘·감독

(a)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³⁵⁾ 또한 이 법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³⁶⁾

(b)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권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³⁷⁾

(3)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방안

(가) 2004년의 개정(안)³⁸⁾

행정자치부에서는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여 왔는데, 2004년의 개정(안)에서는 그 이유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

35)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36)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37)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38)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 중에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에는 정부의 일부개정안, 이해훈의원의 대표발의 폐지법률안, 박찬숙의원의 대표발의 개정법률안, 공성진의원 대표발의안, 김재경의원 대표발의안, 이은영의원 대표발의안 이 있는데, 이들 법안 중에서 정부안과 대체법안(폐지안)을 제외하고는 본 과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관련성이 없어서 여기서는 정부안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편 이해훈의원의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안인데, 이 안에서는 개인정보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차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업무(조정업무를 포함)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주목된다.

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을 제한하는 등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체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안)의 주요 개정골자는 첫째,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자의적(恣意的)으로 수집·제공 등을 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의 위탁, 목적외 이용 또는 제공, 파기 등을 하는 경우 그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다.³⁹⁾ 둘째,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변경하였다.⁴⁰⁾ 셋째,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목적외의 이용 또는 제공을 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 이용 또는 제공의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였다.⁴¹⁾ 넷째,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을 파기하도록 하였다.⁴²⁾ 다섯째,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 등을 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사실확인을 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³⁾ 여섯째,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개인

39)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안 제4조제2항,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10조의2제2항.

40)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안 제6조제1항.

41)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안 제10조제3항.

42)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안 제10조의2 신설.

43)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안 제18조의2 신설.

정보화일의 보유·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추가하도록 하였다.⁴⁴⁾ 일급제,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였다.⁴⁵⁾

(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심의위원회는 그 주된 기능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공공기관간의 의견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감독기능이 없으며 또한 단순한 심의·조정역할을 하고 있어서 최근 정보화가 강화 및 확대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2. 교육기본법

2005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NEIS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령을 다시 재정비하여 그 동안에 제기되어 온 학생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2005년 개정된 교육기본법에서는 첫째,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 등에서 NEIS시스템으로 처리되는 교무·학사, 보건 등 학생정보 관련 업무가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업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전자화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종전에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업무를 “행정업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로 하였다(동법 제23조의2).⁴⁶⁾

44)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안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45)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안 제20조의2 신설.

46) 교육기본법 제23조의2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업무의 전자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

둘째, 학생정보의 보호원칙을 도입하여 학생정보를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관리하고, 법률이 정하거나 당해 학생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23조의3 신설).⁴⁷⁾

3. 초·중등교육법

NEIS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학생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동법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 신설).⁴⁸⁾ 즉 NEIS시스템의 구

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7)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48) 초·중등교육법에서 새롭게 편입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0조의4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의5 (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외에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30조의6 (학생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①학교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

축·운영에 대한 명시적 조항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학생정보의 제공원칙도 마련하였으며 정보시스템의 관리감독에 대하여도 명시하였다.

4. 학교보건법

NEIS시스템을 통한 학생 건강검사 결과의 기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동법 제7조의3).⁴⁹⁾ 즉 건강검사기록의 기재사항(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상급학교의 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을 마련하였다.

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 ②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당해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30조의7 (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및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49) 학교보건법 제 7 조의3 (건강검사기록) 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③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해당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II. 적용사례

1. 서울지방법원의 판결

NEIS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고3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CD에 담아서 전국대학에 입시자료로 제공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은 CD의 제작배포금지처분을 인용하였다.⁵⁰⁾ 이 사건에서는 선결과제로 NEIS에 의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집적하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이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작성·관리할 법률상 근거는 없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이 NEIS시스템을 통하여 각 고등학교로부터 재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집적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집적한 자료를 콤팩트디스크(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작하는 이 사건 CD뿐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 제작하는 콤팩트디스크도 포함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제작하는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에도 각급 학교장이 학교생활기록부 전산매체와 출력물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3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에 관한 기준만을 설정할 권한이 있을 뿐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관리 권한은 각급 학교장에게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배포하는 등의

50) 서울지방법원 2003카합3433.

권한도 각급 학교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2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의 지원과 교육정보산업의 육성 등 교육의 정보화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의2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은 각급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의 정보화, 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NEIS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의 유지·관리하에 있으나 재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한 입력·관리권한은 각급 학교의 담당교사에게 있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에게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으므로 NEIS 자체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이 교육기본법 제23조, 제23조의2에 기한 교육의 정보화, 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의 일환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업무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을 구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비록 담당교사의 개인정보에 대한 입력·관리권한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이 부여한다 할지라도 이를 통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2차적인 통계자료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의 접근권한에 관하여도 이를 두고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관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는 힘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 근거한 교육행정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이 NEIS의 유지·관리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에서도 NEIS시스템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에서 문제된 사항에 한하여 합헌성을 인정하였다.⁵¹⁾ 즉 이 사건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학생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며 청구된 2003 헌마282,425(병합) 사건(주심 周善會 재판관)에 대하여 7월 21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청구인의 개인정보 중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NEIS에 보유하는 행위(2003헌마282 사건)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거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다. 즉 기존의 NEIS는 인사, 물품, 회계 등 22개 일반행정 영역과 교무·학사 등 5개 영역으로 구축되었으나,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의 3개 영역은 NEIS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NEIS에 청구인들에 관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행위가 심판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중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보유한 행위만이 심판대상이 된 것이므로 이번 결정에서 NEIS 전체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발표한 2003. 6. 1.자 위 시행지침 중 ‘고2 이하에 대하여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에 대하여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C/S(학교단위별 분산연계시스템),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 부분(2003헌마425 사건) 등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51) 2003헌마282,425.

제 5 절 소 결

이상에서 살펴본 학생정보의 보호에 적용되는 법률은 2004년의 관련개정으로 어느 정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학생정보에 관련하여 학부모의 권리와 자격이 있는 학생의 권리에 대하여는 최근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강화에 충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학부모의 학생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 등의 권리를 공공기관개인정보법과 별도의 입법으로 이를 명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특히 학생정보에 비록 오류가 없다고 하여도 학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담당교사의 의견표시에 대하여 반론기회를 주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반론내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입법이 요구된다.

결국 학생정보의 처리에 따른 법적 문제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법령의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학생정보의 활용 등을 고려한다면 학생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구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미국의 가족교육권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처럼 정부기관이 단위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의 보조금 혜택 등을 제한하는 입법조치가 요구된다. 이들 권리실현을 위한 절차(예컨대, 청문회 등)등도 입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결국 이와 같은 새로운 입법사항은 별개의 새로운 입법을 통한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4 장 학생정보 감독기구의 설치와 그 방안

제 1 절 개 관

연구목적에서 지적했듯이 종래 (구)국무총리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권고에서는 학교장의 정보관리 권한을 보장하고 시범운영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서버 운영 방안을 재검토하는 등 새로운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 등을 감독기구의 기능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내에 교육정보보호분과를 설치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생정보의 감독기구 설치에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정보화에 대한 불신에서 그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논의를 반드시 부정적인 것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정보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긍정적인 작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정보의 처리나 활용 및 관련법령에서의 보호수준 등에 적합한 감독적 기능을 가진 기구의 설치에 검토할 수 있다. 물론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문제되는 공통적인 문제에 해당되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감독기구의 설치라는 차원에서 접근함이 타당하고, 교육정보화의 분야에만 이와 같은 감독기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 2 절 개인정보와 학생정보의 감독기구

I. 최근 개인정보의 입법동향과 감독기구

1. 입법동향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입법안(예컨대, 6개의 공공기관개인정보법(개정안, 폐지안), 개인정보보호법안(이

혜훈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이은영의원 대표발의) 등이 다수 제출되어 있는데, 그 입법내용과 입법방식은 상호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입법화가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법안에서 감독기구의 설치에 따른 권한과 업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구의 비교분석

구 분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안 (노회찬안) 제74조	개인정보보호법안 (이은영안) 제34조	
적용법률	공공기관개인 정보보호에 관 한법률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안 (노회찬안) 제74조	개인정보보호법안 (이은영안) 제34조	개인정보기본법안 (이혜훈안) 제41조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개 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	개인정보의 보호 에 관련된 사항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사항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사항
역 할	심의기구	감독기구	행정기관· 분쟁조정기구	중앙행정기관
소 속	국무총리	독립기관	국무총리	독립기관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업무	○ (제1호)	○ (제1호, 제2호 및 제7호)	○ (제1호, 제2호)	○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실태 등의 조사 및 연구업무	×	○ (제5호)	×	○ (제6호)
조정기능	○ (제2호)	×	○ (제4호)	○ (제5호)
조사 및 구제업무	×	○ (제3호)	○ (제3호)	○ (제4호)
기술지원 등의 업무	×	○ (제4호)	○ (제5호)	○ (제7호)
교육 및 홍보업무	×	○ (제6호)	○ (제7호)	○ (제8호)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	×	○ (제8호)	○ (제8호)	○ (제9호)
단체등의 지원업무	×	○ (제9호)	○ (제6호)	×
개인정보의 등록업무	×	○ 제10호	×	×

구 분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사전영향 평가업무	×	○ 제11호	×	×
기타업무	×	○ 제12호	○ (제9호)	○ (제10호 및 제11호)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법안들에서 감독기구의 특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그 권한과 업무도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따라서 당장에 개인정보의 감독기구가 설치될 가능성은 낮고, 설치된다고 하여도 학생정보에 대한 세세한 부문까지 규율하는 배려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

2. 현행법상의 감독기구

(1)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공공분야에서는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이 주목되는데, 이 법은 공공기관에서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은 제20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하여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i)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ii)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공공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0조제2항). 또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공공기관의 소속직원과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는 1991년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후 엄청난 사회변동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에서 제도개선이나 공공기관의 의견조정 등의 기능에만 역점을 두고 있어서 오늘날 행정정보의 전산화와 공동이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라는 지적이 있다.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민간분야에서도 전산화 내지 정보화로 인하여 정보통신영역의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제33조제1항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정보통신사업자와 이용자(또는 사업자) 또는 이용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분쟁조정 결과는 당사자가 합의한 것으로 본다.

(3) 신용정보협의회

민간분야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는 종래 신용정보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신용정보의 집중관리와 활용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위 신용정보협의회라는 사업자단체를 두고, 이 기구에게 (i)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ii)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의 이행실태에 대한 조사 및 제재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iii)신용정보의 업무목적의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iv)기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하도록 하였다(동법 제

17조의2).

(4) 소 결

이상과 같이 감독기능을 가진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각종의 위원회 등은 정책심의 중심으로 위원회(예컨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등)가 대부분이었는데, 근래 민간분야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조정기능을 가진 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나타나고 있으며,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위원회도 논의되고 있다(예컨대, 정부혁신분권위원회의 (가칭)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위에서 살펴본 위원회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4] 각종 감독기구 주요기능 등의 비교분석

유 형	주 요 기 능	특 징	사 례	근 거 법 령
심 의 위원회형	-정책및제도개선사항 심의 -기관간 의견조정 사 항 심의 -법령 등의 정비 심의	-단순 심의 기구 -독립성 및 분쟁조정기 능 부재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공공기관의개 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조 정 위원회형	-분쟁조정 신청·접수 -사실조사 및 청문 -합의권고, 분쟁조정	-분쟁조정기 능 보유 -독립된 행 정 기 구 의 성격 없음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정 보 통 신 망 이 용 촉 진 등 에 관한 법률
독 립 위원회형	-정보보호 시책수립 및 집행 -정보보호 법령 및 제 도개선 -사실조사 및 청문 -시정명령, 분쟁조정	-분쟁 조정 등 준사법 기능 보유 -중앙행정기관 으로서 조직 상 독립	-(가칭)개인 정보위원회	-정 부 혁 신 지 방분권위 추 진(안)

이와 같은 위원회의 형태 중에서 (가칭) 학생정보보호위원회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기능, 특성 등을 고려하면 자문위원회이자 심의위원회의 특성을 지닌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Ⅱ.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 등과 학생정보의 감독기구

1.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와 장관의 부령권 등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 「대통령의 통할하에 교육인적자원부를 둔다」에 의하여 설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권한과 업무는 동법 제28조제1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하여 그 직무권한을 설정하고 있다(정부조직법 제28조제1항). 또한 초·중등교육법은 제30조의 7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0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및 제30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고 하여 NEIS시스템으로 처리되는 정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교육감의 권한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서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보조기관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

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동법 제6조제2항). 또한 정부조직법은 제6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소관사무 중에서 일부를 법령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의 설치와 그 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사무 내에서 학생정보 보호를 위한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헌법은 제95조에서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종의 행정입법권(최광의)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과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근거없이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또는 행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⁵²⁾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제정하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각각 행정입법권의 한계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부령(위임명령)으로 규율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내용과는 다른 규정을 만들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부령은 헌법 제95조에 기초한 권한에 해당되고 상위의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구체화하는 위임명령에 해당하는 것도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자체의 업무수행 등

52) 행정입법은 법규성(대외적 구속력, 재판규범성)을 가지는가 여부에 따라 크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 할 수 있다. 즉 행정기관이 정립한 법규범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이라 하고,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을 행정규칙 또는 행정명령이라 한다.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직접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2. 학생정보 감독기구의 설치 필요성

위에서 간략히 지적한 것처럼 (가칭)개인정보기본법(안)과 공공기관 개인정보법의 개정(안) 등이 추진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입법(일반법)에서 규율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감독기구의 특성 및 역할 등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국무총리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권고와 새로운 NEIS시스템의 운영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나름대로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는 여러 가지의 이유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근거에 따라 동 위원회의 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첫째, NEIS시스템을 이용한 학생정보의 처리는 종래 종이문서에 의한 학생정보의 보관 및 관리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고 전자적 처리로 인하여 학생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히 높아졌다. 둘째, 이와 같이 학생정보의 처리가 변화됨과 동시에 학생정보의 활용도 용이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종래 종이문서 시절의 학생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령으로는 전자적인 형태의 학생정보를 적절히 규율하기가 어려운데, 최근 관련법령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학생정보의 보호는 보다 강화될 것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사회적 욕구에 따라 새로운 독립입법이 문제되고 또한 학생정보 감독기구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제 3 절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와 그 방안

I. 감독기구의 특성

최근 학교의 전산화 내지는 정보화는 급격히 성장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학생정보가 학교의 담장을 넘어 CD형태로 대학 등의 기관에 제공되었으며 NEIS시스템이라는 16개 시·도교육청 단위의 웹기반의 정보시스템으로 교육업무가 처리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종래 종이문서 시절과 비교할 때 학생의 정보가 유출되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학생정보의 보호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형사책임과 민사책임과 같은 방법으로는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정보의 감독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구)국무총리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와 정부방침에서 NEIS시스템의 서버운용에 대한 사항도 재검토할 감독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가 있다.

그러면 현재의 상황(학생정보의 처리 및 활용상황, 관련법령의 정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수준의 감독기구가 요구되는가가 문제된다. 2006년에 새로 구축된 NEIS시스템은 단일한 프로그램으로 입력정보가 표준화되어 있고, NEIS시스템의 서버는 16개의 시·도교육청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NEIS시스템에서 학생정보의 활용은 현재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학생정보의 처리에 용이하도록 하는 역할만이 이루어지고 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독립된 기관이 아닌 교육인적자원부 내의 자문형 감독기구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 16개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단위의 단일위원회로 만들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물론 NEIS시스템을 이용한 학생정보의 처리 내지 활용이

향후에 현저히 달라지는 경우(학생정보의 활용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독립된 입법을 통하여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를 법률차원에서 규율하고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결국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학생정보 감독기구의 특성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장관과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에 대한 자문 내지는 권고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입법의 방식도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부령 등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즉 정부내의 각종 위원회처럼 부령, 훈령 등의 형태로도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감독적 기능을 가진 자문형 위원회로 그 성격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형태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정부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또한 국민의 권리의무 등과 같이 법률차원에서 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도 그 권한이나 업무로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정부기관이 자신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계획의 수립이나 집행 등에 관련된 사항의 위탁은 가능하고(단, 법률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법률에서 다른 정부기관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자문 등과 같이 보조적인 기능은 가능하다.

II.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방안

1. 목 적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는 그 주된 기능이 학생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동 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전자적 업무(NEIS으로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감독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포괄적인 감독권은 국회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가지고 있으며(감사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도 제한적으로 관련업무에 대한 감사 등을 할 수 있음), 만약 (가칭)학생

정보보호위원회가 이와 같은 포괄적인 감독권을 가지고자 한다면, 적어도 국회에 의한 법률로 제정되어야 하고, 제3의 독립된 기구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결국 현시점에서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부령 등으로 규율될 수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성격은 자문형 심의기구에 해당될 수밖에 없으며 그 심의대상도 학생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만 (구)국무총리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와 정부방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새로운 NEIS시스템의 서버(독립서버, 그룹서버)에 대한 심의가 포함될 수 있다.

2.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등

(1) 위원회의 설치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는 초·중등학교의 학생정보에 한정하여 그 보호를 대상으로 하고, 이 경우 학생은 재학중인 학생은 물론 졸업생도 포함한다. 왜냐하면 NEIS시스템의 물리적 기반이 초·중등학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중등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나 대학 등에서의 학생정보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위원회는 NEIS시스템으로 처리되는 학생정보가 주된 대상이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종이문서의 학생정보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

한편,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는 특별히 임시적이라는 문구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가칭)개인정보기본법이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여 학생정보를 전부 커버한다면 폐지될 수 있고 법규의 형식상으로도(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와 비교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가칭)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일종의 감독 내지는 감시기능을 가진 기구가 만들어지면, 학생정보도 여기에 포함되어 보호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설치될 수 있는 학생정보의 감독기구는 한시적 내지는 임시적인 성격의 기구가 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의 형식에 있어서도 교육인적자원부의 부령, 훈령 또는 지침 등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가 국가차원의 개인정보감독기구 설치 등의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에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국가차원의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성격이나 역할 등과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관련입법의 정비 이후에 다시 존폐여부와 그 역할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위원회의 기능

(가) 업무의 내용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학생정보의 침해에 대한 심의기능 외에 학생정보의 보호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NEIS시스템에 의한 학생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어서 이 또한 심의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학생정보 침해에 대한 심의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 학생정보의 침해자는 크게 2가지의 유형, 즉 ‘개인(정당한 권한을 가진 접근자나 해킹 등에 의한 권한없는 접근자)이나 단체 등에 의한 학생정보의 침해(범죄행위)’와 ‘학교등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한 학생정보의 침해’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통상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행위로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으로 진행되고 전자에 의한 학생정보의 침해는 범죄행위를 구성하게 되어 사법기관의 업무로 넘어가게 되며 이와 관련해서 동 위원회가 관여할 여지가 없고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영역과도 관련성이 없다. 즉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동 위원회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는 후자이고, 후자는 학생정보의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 등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그 대상으로 한다. 결국 학생정보의 침해에 대한 심의는 학교 등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행이나 행정행위 등의 조치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개인에 의한 학생정보의 침해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는 학생정보 보호의 시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과 학생정보의 침해에 관한 사항 외에 학생정보 보호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및 NEIS시스템의 단독서버·그룹서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NEIS시스템으로 처리되는 학생정보에 대한 최종이용자인 담당교원이 종래(종이문서에 의한 시절)의 관행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예방하고 또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학생정보의 오·남용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를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한 것은 정보시스템의 도입과정(교육정보화위원회의 합의과정)에서 문제된 서버의 운영에 관련된 것으로 향후 단독서버와 그룹서버의 문제점과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안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에서 포함될 수 있다.

(나) 학생정보의 침해심사

(a) 심사절차

학생정보의 침해에 대한 심의요건은 첫째, 학생정보에 해당될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학생정보는 NEIS시스템상의 학생정보가 주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종이문서의 학생정보도 특별히 배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의대상이 된다. 학생정보와 관련해서 학생은 재학생과 졸업생을 모두 포함한다. 둘째, 위에서 지적했듯이 학교 등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의한 학생정보의 침해에 한정하여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셋째, 학생정보의 침해사실이나 침해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학생정보의 침해가 있었다 라는 증거가 있거나 침해가능성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나 사실 등을 주장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정보주체인 학생의 신고(법정대리인에 의한 신고도 가능함)가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학생정보의 침해신고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인 학생이고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가 요구된다. 물론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행위에 의한 신고접수도 가능하다.

(b) 신고 등

학생정보의 침해사건에 대한 신고는 위원회에 할 수 있지만, 신고의 접수는 해당 지역신고센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신고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닌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도록 하고 신고접수 단계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위원회는 일정한 기간내(예컨대, 60일 이내)에 학생정보의 심의를 종료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여전히 훈시적 규정임), 심의결과 제도개선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위원회의 침해신고는 신청인의 특정이 요구되는데, 이 경우 신청인(학생)의 성명, 학교명, 학년·반(또는 주민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졸업생 등의 경우에는 학년 및 반을 기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특정할 수 있다).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특정을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학생이 성인인 경우에는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c) 심의결과의 통보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신청인 및 관계 조치기관에 통지하고 심의결과를 받은 조치기관은 이를 존중하도록 하며, 일정한 기간내(예컨대,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통지를 받은 조치기관의 장이 그 심의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권고사항의 심의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는 학생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심의를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과 관련자의 증언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조치기관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는 학생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심의한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개선을 조치기관(통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자문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치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가) 구 성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는 통상의 경우처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어 위원장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수는 위원회 기능의 다양성(예컨대, 정책심의 이외에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대한 심의 및 서버운영의 심의 등)을 고려

하여 통상적인 회의체 형태(예컨대, 15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속하에 설치되므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을 위촉하도록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한편,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관련분야의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 즉 첫째,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및 정보통신부의 일정한 직급의 공무원(예컨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소관 법률로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제도의 마련과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둘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데, 주로 보안기술전문가와 정책전문가와 같은 기술적·행정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지만 그 범위를 다소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셋째, 초·중등학교의 교원으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예컨대, 10년이상 재직한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교육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데, 이는 교육분야의 전문가이자 실질적으로 NEIS시스템의 주된 이용자인 교원을 포함시켜 학교현장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교직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 단체의 추천자를 위원으로 하는 경우 위원회의 중립성(예컨대,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대한 심의라는 준사법적 기능 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비록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가 그 추천이 철회된다고 하여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위촉 또는 임명에 대하여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해당 위원 스스로 사임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직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위원회의 기능(특히, 학생정보의 침해사건에 대한 심의 등)에 비추어 반드시 법조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도출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법원칙 등에 반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제3의 중립적인 참여자를 통하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나) 임 기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통상의 경우 처럼 2년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연직 위원(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임기를 설정하여 관련업무와 연계시켜서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라는 특성을 반영할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기간 동안에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를 대비하여 위원회 자체에서 위원윤리규범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위원은 위원회가 의결을 통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그 해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한편,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사임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어서 새로이 위촉된 자의 경우 그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설정하여 임기말로로 새로이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간에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위원회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기존의 심의와 달리 새로운 심의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4)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위원장은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업무중단(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의한 위원장 위촉이 있을 때까지)을 방지할 수 있다. 물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통상의 경우처럼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외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통상적인 의결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가칭)학생정보침해신고센터의 설치

학생정보의 신고접수 등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학생정보 신고센터와 시·도교육청에 지역학생정보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 경우 중앙신고센터와 지역신고센터는 기존의 개인정보신고창구와 중복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고 또 상호업무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신고창구를 활용하여 학생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 침해사건의 접수를 해당 지역신고센터로 한정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지역의 시·도교육청의 업무에 해당되고 해당 교육청이 이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 침해신고센터는 단순한 접수기관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타당하나, 이밖에 침해신고센터는 학생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접수와 학생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하고 학생정보의 이용자(통상 교원)가 학생정보를 침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제 5 장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 중에서 입법과 관련된 것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I. 학생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에 개인정보와 별개의 독립된 입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학생정보에 대한 공개 및 학부모의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및 반론권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이들 권리의 실현을 위한 적절한 조치(예컨대, 기금사용의 제한 등)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학생과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NEIS시스템에 관련된 법령에 정비가 2004년에 있었지만, 학생정보의 보호는 여전히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미국의 ‘가족의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부모와 자격이 있는 학생의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및 반론권 등을 규율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학생정보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II. (구)국무총리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권고 및 정부방침에 따라 학생정보 보호에 관한 감독기구의 설치가 문제되고 있는데, 현재 NEIS시스템을 통한 학생정보의 처리 상황과 학생정보의 활용, 그리고 관련법령의 개선 등을 고려할 때 교육인적자원부 내의 자문기구 형태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주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국무총리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권고 및 정부방침에서 제시한 학생정보에 대한 감독기구의 설치는 중앙단위와 시도단위에서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만, NEIS시스템의 단일성과 학생정보의 획일성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고 중앙단위의 설치방안이 적합하다.

둘째,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장차 설치가 예상되는 국가차원의 독립적 감독기구 특성과 그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자문형의 위원회가 적절하고 범규형식도 자문위원회의 특성과 그 업무에 비추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부령 등으로 가능할 수 있다.

셋째, 감독기구의 심의대상은 학생정보의 침해사건에 대한 심의, 보호시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및 NEIS시스템의 단독서버·그룹서버의 운영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될 수 있다.

넷째, 학생정보의 침해신고는 시·도의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창구를 활용하여 학생정보의 침해신고접수 및 학생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다섯째, 심의결과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이 학생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결과를 조치기관이 존중하도록 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건의할 수 있다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Ⅲ. 위의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학생정보에 대한 독립된 새로운 입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이 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기구 형태의 감독기구를 넘어서는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차원의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치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화 이후에 (가칭)학생정보보호위원회의 특성은 국가차원의 개인정보보호기구와 학생정보의 활용 등에 따라 그 특성 등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부 록]

미국의 “가족의교육권및프라이버시에관한법률”

제1232g조 가족의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

(a) 교육기관의 기금사용 조건; 교육기록에 대한 검사 및 열람; 이용할 수 있는 특정정보; 교육기록에 접근하기 위한 절차; 교육기록을 접근하기 위한 시간의 적절성; 청문; 부모의 서면 설명서; 정의

(1)

(A)

교육기관이 재학중인 학생 또는 재학한 바 있는 학생의 부모가 가지는 자녀의 교육기록에 대한 검사·열람할 권리를 부정하거나 사실상 방해하는 경우에는 적용가능한 프로그램에 의한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학생의 교육기록 내의 자료 또는 문서가 한명 이상의 학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학부모는 그 자료 또는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자녀와 관련된 특정정보에 대해 통지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검사·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기록 접근신청이 있는 경우에 모든 교육기관은 부모의 요청이 있는 후 4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이를 승인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B)

동법의 적용대상인 교육기관에 재학중이거나 재학한 바 있는 학생교육기록에 대한 학부모의 검사·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

정하거나 또는 사실상 방해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 교육기관(동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인지의 여부는 관계없이)은 적용가능한 프로그램에 의한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C)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다음 사항은 (A)항 제1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i)

학부모의 금융기록 또는 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정보;

(ii)

본래의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교육기록에 포함된 비밀서신 또는 추천서;

(iii)

학생이 (D)항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한 접근권을 포기한 경우에 다음의 비밀추천서

(I)

모든 교육기관의 입학과 관련된 비밀추천서

(II)

취업신청에 관한 비밀추천서 및

(III)

수상 또는 명예수상에 관한 비밀추천서

(D)

학생 또는 입학지원자는 (C)항 (iii)에서 규정한 비밀서류에 대한 접근권을 포기할 수 있다. 단, 권리포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는 추천서에 적용되어야 한다.

(i)

학생의 요청에 의하여 비밀추천서를 작성한 모든 관련자의 성명을 통보받은 경우 및

(ii)

이와 같은 추천서가 본래 의도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 단 이 경우 포기는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 장학금 수여, 기타 서비스 또는 혜택을 수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2)

교육기관은 재학중이거나 재학한 바 있는 학생의 부모에게 주무부처의 규칙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용가능한 프로그램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첫째, 학부모가 학생의 교육기록이 부정확, 오인 또는 학생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의 교육기록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둘째, 학생의 교육기록 내용에 부정확, 오인 또는 부적절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한 경우 셋째, 학생교육기록의 내용에 대한 학부모의 서면답변서를 해당 기록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우이다.

(3)

동법에서 “교육기관(educational agency or institution)”이라 함은 적용가능한 프로그램에 따라 기금을 받는 모든 공립·사립기관을 의미한다.

(4)

(A)

동법에서 “교육기록(education records)”이라 함은 (B)항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을 의미한다.

(i)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 파일, 문서 및 기타 자료

(ii)

교육기관에 의하여 또는 교육기관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 파일, 문서 및 기타 자료

(B)

“교육기록”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i)

교체자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이나 공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오직 지도·감독·행정직원 및 교육보조직원만이 보유하고 있는 사적이고 부수적인 기록;

(ii)

교육기관의 법집행 부서가 법집행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

(iii)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이 아닌 고용된 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작성·유지되는 오로지 피용자로서의 개인능력에 관한 기록으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록; 또는

(iv)

의사, 심리치료사, 심리학자 또는 기타 전문가나 준전문가가 업무상 내지는 보조과정에서 작성·관리되고 치료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전문가 이외의 자는 이용할 수 없는 18세 이상 또는 중등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기록. 단 이 경우 학생기록은 학생이 선택한 다른 의사나 적절한 전문가에게 개인적으로 검사받을 수 있다.

(5)

(A)

동법에서 학생에 대한 “인명정보(directory information)”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학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과 출생지,

주요전공분야, 공인된 활동 및 스포츠의 참여, 체중과 신장, 출석 일수, 취득한 학위 및 상장, 가장 최근에 학생이 다닌 교육기관

(B)

인명정보를 작성하여 공개하는 모든 교육기관은 재학중인 학생의 인명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의 범주를 특정하여 공개적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은 통지를 받은 학부모가 사전동의 없이는 지정된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6)

동법에서 “학생(student)”이라 함은 교육기관이 보유하는 교육기록 또는 개인식별 정보의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해당 교육기관에 다닌 적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b) 교육기록의 공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예외; 법원명령 및 영장(judicial orders and subpoenas)의 집행; 연방지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감사와 평가; 기록관리

(1)

부모의 서면동의 없이 교육기록(동법 (a)(5)항에서 규정한 인명정보 이외의 개인식별 정보)을 다른 개인, 기관, 단체에 공개할 수 있는 정책 또는 관행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육기관은 적용가능한 모든 프로그램에 의한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교육기관의 교사, 또는 교육기관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아동의 교육적 이익을 포함하여 교육기관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정된 교육적 이익을 가진 자;

(B)

학부모가 원할 경우 교육기록의 이전에 대한 통보를 받고 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며 기록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학생이 등록 또는 진학하려고 하는 다른 학교 또는 학제의 교직원;

(C)

(i)

(3)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다음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I)

미연방감사원장

(II)

주무장관

(III)

주 교육당국 또는

(ii)

(3)항에 의해 주무장관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법 집행을 위한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

(D)

학생의 재정지원에 관한 신청 및 그 수령에 관한 사항의 경우;

(E)

주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정보를 특별히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주와 지방의 공무원 또는 담당자가

(i)

1974년 11월 19일 이전에 채택된 주법에 따라 학생기록의 공개가 소년사법제도 및 그 제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보고 내지는 공개가 허용된 경우 또는

(ii)

1974년 11월 19일 이후 채택된 주법에 따라

(I)

선고에 앞서 학생기록의 공개가 소년사법제도 및 그 제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보고 내지는 공개가 허용된 경우; 및

(II)

주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를 제공받는 관계자 또는 기관이 교육기관에게 학부모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되지 않음을 서면을 통해 입증하여 준 경우

(F)

예비시험의 개발·시행·운영, 학생지원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지도 개선을 목적으로 교육기관을 위하여 또는 교육기관을 대신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가 기관의 대표자를 제외한 다른 자가 학생 및 학부모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연구 목적상 학생 및 학부모의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파기되는 경우;

(G)

인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가기관;

(H)

제26장제152조에 정의된 부양학생의 학부모

(I)

주무장관이 제정한 규칙에 따라,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기타 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절한 자; 및

(J)

(i)

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영장에서 지정된 교육기관(교육기관의 모든 관리자, 임원, 종업원, 대리인 또는 변호사)

이 영장발부의 사실 내지는 내용을 공개하거나 또는 영장에 따라 연방대배심의 영장에서 지정한 단체 내지는 개인에게 대배심에 제공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한 경우; 및

(ii)

법원 또는 기타 영장발부기관이 교육기관(모든 관리자, 임원, 종업원, 대리인 또는 해당 조직 내지는 기관의 변호사)에게 영장발부의 사실이나 내용을 공개하거나 또는 영장에 따라 대배심에 제공된 정보를 법집행의 목적으로 발부된 기타의 영장에서 지정한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명령한 경우

(b)(1)(E)항은 주가 (b)(1)항에 따라 계속해서 정보접근권을 가지는 주 또는 지역의 담당자 수와 유형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2)

인명정보 이외의 교육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식별 정보 또는 (b)(1)항에 의해 허용된 예외가 아닌 정보를 공개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가지는 모든 교육기관은 적용가능한 프로그램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A)

학부모가 특정한 기록의 공개 및 공개이유와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서면동의가 있고 학부모의 요청하는 때에 공개되는 기록의 사본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제공되는 경우 또는

(B)

(1)(J)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기관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법명령이나 영장에 따라 교육기록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통지한다는 전제하에, 법원명령이나 법률에 따라 발부된 영장에 따라 교육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3)

동법은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연방지원교육 프로그램의 감사와 평가를 위하여, 또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방법의 요구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기록 및 기타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A)

미연방감사원장

(B)

주무장관 또는

(C)

주 교육당국. 단 개인식별 정보의 수집이 연방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승인된 경우 담당자는 자신 이외에는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개인식별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수집한 데이터가 감사, 평가 및 연방방법 요구사항의 집행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파기하여야 한다.

(4)

(A)

모든 교육기관은 학생의 교육기록과 그 기록에 대한 요구나 접근을 한 모든 개인(본 (b)(1)(A)항에 명시된 자 이외의), 조직, 기관을 기술한 기록과 모든 개인, 조직 또는 기관이 이와 같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갖게 되는 적법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기록을 보유·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접근기록은 학부모와 기록보호의 책임이 있는 학교관계자 및 보조직원, 제도운영의 감사 수단으로서 (1)(A)항과 (C)항에 따라 승인된 사람 또는 기관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b)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학부모의 서면동의 없이는 다른 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서만 이전되어야 한다. 교육기관 이외의 제3자가 (b)(2)(A)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접근을 허용하거나 또는 (b)(1)(F)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파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기관은 해당 제3자에 대하여 5년 이상 교육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동법은 주나 지역의 교육관계자가 연방이나 주 지원교육프로그램의 감사 및 평가를 위하여, 또는 (3)항에 명시된 조건의 적용을 받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법 요구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록 및 기타 기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6)

(A)

동법은 중등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이 (제18장제16항에 정의된 바에 의거한) 범죄행위나 위반행위를 범한 가해자로 추정되는 자의 범죄의 피해에 대하여 행한 징계처분의 최종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B)

만약 중등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이 (제18장제16항에 정의된 바에 의거한) 폭력범죄 또는 비강압적 성범죄에 관련하여 징계절차를 거친 결과 교육기관의 규칙이나 방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 동법은 교육기관이 그 범죄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내린 징계처분의 최종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석해서는 안 된다.

(C)

본 항에서 모든 징계처분의 최종결과는 다음과 같다.

(i)

학생의 이름, 위반행위 및 해당기관이 학생에게 부과한 벌칙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ii)

본인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 또는 증인과 같은 다른 학생의 이름을 포함할 수 있다.

(7)

(A)

동법은 제42장 제14071조에 의거하여 교육기관에 제공된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

주무장관은 교육기관에 (A)항에 기술된 정보의 공개가 허용됨을 통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 설문조사 또는 데이터 수집활동; 규칙

주무장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 의해 실시·지원되는 설문조사 또는 데이터 수집활동과 관련하여 학생과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무장관은 1994.10.20일 이후 240일 이내에 적절한 규칙이나 절차를 채택하거나 또는 현행의 규칙이나 절차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제정된 규칙은 데이터의 사용 및 공개를 통제하고,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설문조사 또는 데이터 수집활동은 법에 의해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d) ‘부모’가 아닌 학생의 허락 또는 동의

학생이 18세가 되었거나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동법의 목적을 위해서는 학생의 허가 또는 동의가 필요하며 학부모에게 부여된 권리는 학생에게 이전된다.

(e) 동법에 의한 학부모 또는 학생의 권리 통보

동법에 의하여 학부모 또는 18세이상 내지는 중등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인정된 권리를 효과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교육기관은 적용가능한 모든 프로그램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f) 집행; 지원중단

주무장관은 동법에 의하여 동법의 집행과 동법의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주무장관은 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발견한 때에 자발적인 조치에 의해 개선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g) 사무국 및 심사위원회; 창설; 기능

주무장관은 동법의 위반 및 동법의 위반으로 추정되어 이의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처리 및 결정을 하기 위한 사무국 또는 심사위원회를 부처 내에 설립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청문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에 의해 주무장관의 직무는 해당 부처의 지역사무소가 수행할 수 없다.

(h) 징계기록; 공개

동법은 교육기관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

(1)

교육기관이 학생 자신, 다른 학생 또는 기타 교내의 구성원의 안전과 복지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내린 징계조치에 관하여 학생의 교육기록 내 적절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행위; 또는

(2)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교육적 이익을 가지는 해당 학교 및 다른 학교의 교사와 교직원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i) 마약 및 음주 위반의 공개

(1) 일반 사항

동법 또는 1965년에 제정된 고등교육법(20 U.S.C. 1001 이하 참조)은 고등교육기관이 학부모나 법률상 보호자에게 주류 내지는 규제물질의 사용이나 소지를 규율하는 연방법, 주법, 지방법 또는 교육기관의 규칙이 정책의 위반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정보가 학생의 교육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 없다.

(A)

학생이 21세 미만이고

(B)

해당 학생이 주류나 마약의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한 학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교육기관이 판단한 경우

(2) 공개에 관한 주법

전항의 규정은 고등교육기관에게 (a)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주법의 규정을 대체할 수 없다.

참 고 문 헌

- 강준석, “교육적 측면에서 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행정 정보화의 현안과 과제』, 2003. 9.
- 경 건, 공공정보의 공개·제공법제의 개선방안(접근성확대를 위한 공공 정보의 관리), 인터넷법률 제16호, 2003. 3.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 김민호, 공공정보의 보존에 관한 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인터넷법률 제16호, 2003. 3.
- 김성태, 국가정보화/전자정부정책 추진체계 입법방안 연구, 인터넷법률 제17호, 2003. 5.
- 김성천,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에 관한 연구(현안분석), 한국법제 연구원, 2003.
- 김용섭,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과 조화, 공법연구 제29집 제 3호, 한국공법학회, 2001. 5.
-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한국 법제연구원, 1997.
-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10호, 1997. 7.
- 김재춘,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학생 정보의 수집 및 관리방안”, 『학생 정보 수집의 교육적 필요성 및 관리방안』, 2003. 10.

참고문헌

- 김정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쟁점과 대안』, 2003. 4.
- 김주환,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사민권, 인터넷법률 제4호, 2001.1.
- 김진철, “교육은 없고 행정만 있는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쟁점과 대안 토론회』, 2003. 2.
- 김학한, “인권과 교육의 자율성에 기초한 학교교육정보화”, 『학생정보수집의 교육적 필요성 및 관리방안』, 2003. 10.
- 박순백,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박흥윤, 한국의 통합정보관리체계에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소우영 외,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기관 운영상황 연구, ‘기술정책연구보고서’, 한국정보보호센터, 1998.
- 신상철, “NEIS 정보보안성 검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자료집, 2003.
- 심성보, “교육적 관점에서 본 NEIS의 세가지 위험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쟁점과 대안』, 2003. 4.
- 오양호,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토론편”,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 2003. 9.
- 원신희,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미·EU의 정책동향 및 전망, KIEP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9.

- 이수광, 교육정보화에 따른 학생 사생활권 신장방안, 개인정보연구(제1권제1호), 정보보호진흥원, 2003.
- 이은우, 교육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제1차 공개토론회자료집), 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 2003.
- _____, “자기정보통제권의 개념과 의의”, 『정보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 토론회』, 2003. 4.
- 이인호,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정보화사회에서의 인권, 국가인권위원회의 토론문, 2003.
- _____,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동향 분석, 인터넷법률 제18호, 2003.7.
- _____, 공공부분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분석과 비판, 정보법학 제6권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02.
- _____,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현황과 과제,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제1차 공개토론회자료집), 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 2003.
- 이종영, 독일의 전자정부 법제, 인터넷법률 제16호, 2003. 3.
- 이창희, “학생정보 수집의 교육적 필요성 및 관리방안”, 『학생정보 수집의 교육적 필요성 및 관리방안』, 2003. 10.
- 임종인, “개인정보 보호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 『정보사회에서의 인권』, 2003. 8.
- 임지봉, 미국 연방 전자정부법제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인터넷법률 제17호, 2003. 5.

참고문헌

- _____, 전자정부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검토, 인터넷법률 제 19호, 2003. 9.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터넷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제도연구, 2000.
- 정영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시스템)에 대한 위헌성의 평가, 인터넷 법률(제19호), 법무부, 2003.
- 정태호, 현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위헌성-독일의 인구조사판결의 법리분석과 우리의 관련법제에 대한 반성-, 법률행정논집(제20집),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0.
- 조태제, 공공정보의 작성 및 취득단계에서의 제도개산방안, 인터넷법률 제16호, 2003. 3.
- 하중현,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딜레마와 효과적인 도입 방안, 한국정보보호센터, 1999.
- 한봉조, 정보화사회의 법률문제와 정보보호, 정보법학회 세미나, 1996.
- 한상희외 2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발전방안연구(연구보고서), 행정자치부, 2002.
- 현대호, 인터넷상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00.
- 황규만, “보안문제를 중심으로 바라본 NEIS의 문제점”, 『NEIS의 쟁점과 대안』, 2003.
- 황성주·최선희, 전자정부 사업과 개인정보보호 이슈-NEIS를 중심으로 (KISDI 이슈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David Nice, Education and the law, Councils and Education, 1986.

Dodd, Victoria, Practical education law for the twenty-first century,
Carolina Academic, 2003.

Ketton, Prosser and Keeton on Torts, 5th, Westpublishing Co., 1984.

Oliver Hyams, Law of Education, Sweet & Maxwell, 1998.

Michael Imber · Tyll van Geel, Education Law,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2000.

Ruff, Anne, Education law, Butterworths, 2002.